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34
----------	------

2025년 1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0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상정, 심사보류】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 1. 제안이유

-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적기 치료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의료비 및 의료비 용자 이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제5호)

나.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7. 17. ~ 7.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삼희 (02-2133-7509)

### I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1 검토의견

##### 가.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2024년 12월 23일 서울시와 충청북도는 우수정책 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① 서울시는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② 충청북도는 서울시 대표 교육사다리 정책인 ‘서울린’ 도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음(참고1 참조).
- 위 협약(2024. 12. 23.)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① 의료비 후불제 1차 TF회의(2025. 1. 21.), ② 전문가 자문회의(2025. 5. 7.), ③ 유관기관 업무협의(2025. 5. ~), ④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시범사업 추진 시 협의 제외/2025. 7. 22.) 등을 거쳤음.
- 그리고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서울시는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026년 1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이후, 서울시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에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 개정안을 제출(2025. 8. 11.)한 바 있는데,

#####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34) 】

- 제출자 및 제출일 : 시장, 2025년 08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에게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적기 치료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상정일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9. 3.)

○ 위원회 주요 심사의견

- 오금란 위원 :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걸 아시죠? (중략) 제가 알기로는 자기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됐을 경우에 특히 비급여인 경우에 이를 포함해서 중위소득 거의 100%까지 이걸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본인부담금이 80만 원만 초과돼도 초과분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에서 했던 우수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제안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대출금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자를 내주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 오금란 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적 의료 지원 거기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 시민건강국 :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 오금란 위원 :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근거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안 되고요. 재난적 의료 지원이. 이렇게 굉장히 러프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저는 충북의 실효성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 강석주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병원비, 여기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들 다 계시는데 의료비가 부족하면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은 사회사업실이 다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가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응급지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비 대출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이나 그다음에 지역 위탁병원에 가면 무료 진료를 받습니다. 그 가족들, 유가족들은 60%의 혜택을 받고 본인은 100%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병원비 응자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강석주 위원 :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자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만약에 의료비를 응자받았을 때 (중략) 전혀 지금 경제능력이 없는데 회수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 도문열 위원 : 지금 안전망병원하고 그리고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도문열 위원 :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좀 더 폭넓고 촘촘한 그런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 더 의료 혜택이 적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 대상자도 65세 이상 또는 다자녀가족 중 취약계층이라고요, 대상도 지금 이렇게 축소가 되었어요. 이런 사업을 굳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가져올 이유가 있나, 좀 의문이 있습니다.

#### ○ 심사결과 : 보류

-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동 개정안 심사(2025. 9. 3.) 과정에서 첫째, 이미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고, 또, 서울시는 추가로 안전망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보다 넓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방식으로, 기존제도나 사업의 ‘확대’가 아닌 충청북도의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해야 할 필요성, 셋째, 도입 시, 동 사업이 취약계층의 질병 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넷째, 미상환금 발생 시, 서울시의 리스크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동 개정안은 계류(상정, 심사보류)됨.
- 따라서, 금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와 쟁점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나.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과 서울시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사업 개요

-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도민 중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산모를 대상으로 아래 14개 질환의 수술 및 시술에 소요된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1인당 50~300만 원을 금융기관이 대납하고, 무이자 장기 할부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 충청북도는 대출에 따른 이자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무이자 조건의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또 이자보전 외에도 연체 발생 시 충청북도는 일정 요건 하에 미상환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채권관리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하고 있음<sup>1)</sup>.
- 현재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의 미상환율은 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대출자(1,401명) 중 3.2%(45명)로 높은 상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상환 실패 시, 신용도 하락, 신용불량자 등록 등 동 사업은 구조적인 리스크가 잠재함.
-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32.3%는 의료비 후불제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sup>2)</sup>, 의료비 후불제 1차 TF 회의(2025. 1. 21.)에서 충북 의료비후불제팀장은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에서 채권 추심<sup>3)</sup> 등을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sup>4)</sup>.

---

1) 충청북도(2025. 7.), 의료비후불제 성과분석 연구용역, p.24

2) 위 연구용역 보고서, p.124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채권추심” 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TF 회의(1차) 결과

## < 충청북도 모델과 비교 및 분석 >

지자체 항목	충청북도	서울시(안)
추진근거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 (사업시행) '23.1.9.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개정안 제출(제332회 → 상정보류)
운영조직	道 직영(1팀 4명) * 향후 민간위탁 추진 검토	市 직영
지원대상	▶ 65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65세 이상 또는 다자녀가족 중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질환	14개 질환 임플란트 식립, 치아교정, 틀니,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 추, 암, 소화기(담낭·간·위·충수염),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골절, 안과	13개 질환 * 치아교정 외 동일
대출한도	50만원 ~ 300만원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복지부 협의 중	50만원 ~ 500만원
참여병원	289개소 * 종합병원 13, 병원 21, 의원 255	2개소 * 종합병원 2
기타	【충북 의료비후불제 분석('25.6월말 기준)】 ▶ (대출실행) 77.7% (실행 1,401명 / 신청 1,803명) - 연체율 3.2% (총 45건 ; 대위변제 23건, 1월 이상 미납 22건) ▶ (이용현황) - 임플란트(75.0%, 1,354명) > 치아교정(7.2%, 131명) > 척추(5.2%, 94명) 순 - 청주(56.2%, 1,014명) > 충주(14.5%, 263명) > 음성(9.7%, 176명) 순	

- 서울시가 2026년부터 추진하려는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사업’은 위 충  
청북도 모델과 같이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공적 대  
출을 통해 진료비를 선결제하고, 이용자는 사후에 분할 상환하도록 하  
는 제도임.
- 참고로 동 개정안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2025. 12. 01.) 했다는 점도 동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2026년도 안전망병원 운영 사업 내 ‘의료비 후불제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계	(x-) 284,000	(x-) 197,050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망병원 진료비 평가운영회 수당 150,000원*7명 = 1,050천원</li> <li>○ 의료비후불제 홍보물 및 매뉴얼 인쇄 20,000원*2,000부 = 40,000천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증감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망병원 평가운영회 수당 지급비용 및 의료비 후불제 홍보비 편성</li> </ul>
시책추진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정책사업 업무추진비 10,000,000원 = 10,000천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증감사유</p>
민간경상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료원 등 진료비 지원 1,200,000원*45명 = 54,000천원</li> <li>○ 안전망병원 사업 지원 33,000,000원*2개소 = 66,000천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증감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료원의 취약계층 진료비는 시립병원 손실보전금으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망병원 사업 지원 33,000,000원*2개소 = 66,000천원</li> </ul>
민간위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라매병원 진료비 1,200,000원*70명 = 84,000천원</li> <li>○ 동부병원 진료비 750,000원*80명 = 60,000천원</li> <li>○ 서남병원 진료비 1,000,000원*20명 = 20,000천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증감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립병원의 취약계층 진료비는 시립병원 손실보전금으로 지원</li> </ul>	
이차보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후불제 이차보전금 2,500,000원*400명*0.08 = 80,000천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증감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계치 적용 반영, 대출금(250만원)*지원대상(400명)*대출금리(8%)</li> </ul>

## 다. 개정안의 주요내용별 검토의견

- (지원 대상) 개정안 제8조제1항 각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의료비 용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8조(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용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li> <li>「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li> <li>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p>

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현재 개정안에 따른,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족'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함.
- 이와 관련, 경제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족<sup>5)</sup>'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즉,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계층에는 '6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자녀가 한 명인 가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설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5)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대상 질환) 다음으로 개정안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호·제5호에 따르면,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에는 비급여 항목 까지도 포함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3. “ <u>안전망병원</u> ”이라 함은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3. “ <u>안전망병원</u> ”이란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영역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서 <u>공공의료기관</u> 과 서비스 역할을 분담하는 의료기관	나. ----- ----- ----- <u>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u> ---
다. 공공의료기관이란 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	다.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신 설>	4. “ <u>의료비</u> ”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p><u>&lt;신 설&gt;</u></p>	<p><u>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u></p> <p><u>5. “의료비 용자 이자”란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u></p>
---------------------------	--

- 또한 서울시(안)에 따르면(7페이지 참조), 서울시는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사업 대상질환과 거의 동일하게 임플란트나, 틀니 등을 포함한 13개의 경증 질환이나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함.
- 이와 관련, 현재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분석자료에 따르면(7페이지 참조),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특정 비급여 진료에 이용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서울시는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향후 서울시립병원들은 단순히 신청자 수나 이용 건수 중심의 성과보다, 해당 진료나 시술이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혹은 필요한’ 항목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과잉 진료나 특정 비급여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과 ‘책임성’ 기반의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그밖에 개정안 제2조(정의)는 현행 정의에 “~라 함은”과 같은 표현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란”으로 정비하면서 기존 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추가로 정의하려는 것이고, 제3조(시장의 책무)는 “서울특별시장”의 약칭을 해당 문장

이 처음 나오는 조문(제3조에서 제2조제3호로 이동)에 규정하는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3 종합의견

- 서울시는 충청북도의 우수정책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026년 1월부터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조례상 명칭: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이후, 서울시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에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출(2025. 8. 11.)한 바 있는데,
-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동 개정안 심사(2025. 9. 3.) 과정에서 **첫째**, 이미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고, 또, 서울시는 추가로 안전망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보다 넓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방식으로, 기존제도나 사업의 ‘확대’가 아닌 충청북도의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해야 할 필요성, **셋째**, 도입 시, 동 사업이 취약계층의 질병 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넷째**, 미상환금 발생 시, 서울시의 리스크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동 개정안은 계류(상정, 심사보류)됨.
- 따라서, 금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와 쟁점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참고로 동 개정안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2025. 12. 01.) 했다는 점도 동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끝으로 동 개정안에 따른,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족’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계층에는 ‘6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자녀가 한 명인 가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설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후불제 추진을 위한  
서울시 - 충청북도

##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충청북도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병치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용자를 지원해 주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서울시 도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서울시 의료비 후불제 도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기로 한다.

1. "서울시"의 역할

- 가. 서울시-충청북도 및 의료단체 등 참여 기반 공동 TF 구성·운영
- 나. 사업대상자, 지원범위 등 구체적 사업(안) 마련

2. "충청북도"의 역할

- 가. TF참여 및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위한 노하우 및 자료 공유
- 나. 의료단체 및 금융권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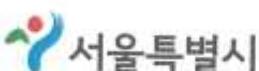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 각 기관은 협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목적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각 서명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2024년 12월 23일



시장 오세훈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도지사 김영환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 참고 2 서울시 추진계획

### □ 추진방향 : 충북 모델 장점을 벤치마킹,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설계

### □ 시범사업 설계(안)

- (지원대상) 65세 이상 또는 다자녀 가족(2자녀 이상) 중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 제332회 임시회 '안전망병원' 조례 개정안 제출, 사업근거 마련
- (사업내용) 금융기관에서 의료비 대출 후 무이자(최장 3년) 분할상환
  - 市에서 이자 지원, 환자는 목돈지출 부담 경감으로 적기 치료 가능
- (참여병원) 시립병원 2개소 시범운영,
  - 효과성 분석 후 민간 확대(본 사업) 검토
  - 진료과목, 외래진료 및 수술 건수 등 고려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시행
  - 권역별 선정하여 내원환자 접근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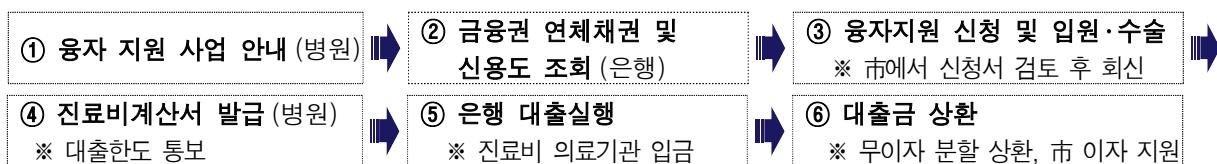


(단기·신·CO. 결금 기준)

대상 (진료과목, 병상)	서울의료원 (26개, 651병상)	보라매병원 (25개, 765병상)
1일 외래진료/수술	1,188 / 17	2,114 / 40

※ 시립병원 7개소(직영 3, 정신병원 3, 북부병원) 수술실 미운영

- (대출한도) 1인당 50만원 ~ 500만원 ※ 수술비(시술비), 입원비 등
- (대상질환) 13개 항목 (수술 및 시술 포함된 질환, 미용 목적 제외)
  - 임플란트(틀니 포함),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담낭·간·위·충수염),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골절, 안과
- (운영규모) 대출금 10억원 (250만 \* 400명) ※ 대출금리 5% 내외
- (사업흐름)



- (소요예산) 연 120백만원 (이차보전금 및 배상금등)

### 참고 3 | 향후일정

-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 ~ '25. 9. (제332회 임시회)
  - (대상조례)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세부일정) 상임위 심사(8~9월), 본회의 의결(9.11.), 조례 공포(9.29.)
- 투자심사 의뢰 및 심의 : ~ '25. 10.
  - 지방재정법 제37조 의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투자심사 대상
  - 투자심사 의뢰(→ 재정담당관, '25.8.) 및 위원회 심의('25.10.)
-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시의회 동의 : ~ '25. 11. (제333회 정례회)
  - 市에서 미상환금 부담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필요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 '25. 12.
  - 전문가 자문 및 운영지침(매뉴얼) 수립
  - 참여기관(시립병원 및 은행) 협약 체결
- 서울형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시행 : '26. 1. ~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4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적기 치료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의료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 제5호)
-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7. 17. ~ 7.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삼희 (02-2133-7509)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라 함은”을 ““공공보건의료”란”으로, ““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을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를 ““안전망병원”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4.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5. “의료비 용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용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u>공공보건의료</u> ”라 함은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 <u>시</u> ’라 한다)가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 <u>공공보건의료</u> ”란 ----- ----- ----- ----- “ <u>시</u> ”----- ----- ----- ----- -----.
2. “ <u>공공보건의료사업</u>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 <u>공공보건의료사업</u> ”이란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u>안전망병원</u> ”이라 함은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3. “ <u>안전망병원</u> ”이란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 <u>시장</u> ”이라 한다)이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영역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서 <u>공공의료기</u>	나. ----- ----- ----- <u>공공의료기</u>

관과 서비스 역할을 분담  
하는 의료기관

다. 공공의료기관이란 민간의  
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  
는 시립병원

<신 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  
를 지원하는 시립병원)---

다.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  
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4.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  
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금)을 말한다.

5. “의료비 용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대  
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용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p><u>제8조</u> ~ <u>제10조</u> (생 략)</p> <p><u>제11조</u>(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u></p> <p><u>④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제9조</u> ~ <u>제11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p> <p><u>제12조</u>(시행규칙) ----- -- 필요한 ----- -----.</p>
--	---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비용발생 요인 : 의료비 융자이자 지원 사업 비용 발생
-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5년 소요비용 추계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지출	이차보전금, 배상금등	12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00,000
		-	-	-	-	-	-
		-	-	-	-	-	-
	소 계(a)	12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00,000
수입		-	-	-	-	-	-
	소 계(b)	-	-	-	-	-	-
	총 비용(a-b)	12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0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12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 계	12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00,000

5. 덧붙이는 의견 : 1차년도 시범사업 기준 작성, 본사업 추진 시 비용추계 재산정

6. 작성자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삼희(2133-7509)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합 계
지출	이차보전금, 배상금등	12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00,000
	합 계	12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00,000